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동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36 발의연월일: 2024. 6. 17.

발 의 자:고동진·강대식·강명구

강민국 · 강선영 · 강승규

곽규택 • 구자근 • 권성동

권영세 · 권영진 · 김 건

김기웅 · 김기현 · 김대식

김도읍 • 김미애 • 김민전

김상욱 · 김상훈 · 김석기

김선교 · 김성원 · 김소희

김승수 · 김예지 · 김용태

김위상 · 김은혜 · 김장겸

김재섭 · 김정재 · 김종양

김태호 · 김형동 · 김희정

나경원 • 박대출 • 박덕흠

박상웅 • 박성민 • 박성훈

박수민 • 박수영 • 박정하

박정훈 • 박준태 • 박충권

박형수 · 배준영 · 배현진

백종헌 • 서명옥 • 서범수

서일준 · 서지영 · 서천호

성일종 · 송석준 · 송언석

신동욱 • 신성범 • 안상훈

안철수 · 엄태영 · 우재준

유상범·유영하·유용원 윤상현·윤영석·윤재옥 윤한홍·이달희·이만희 이상휘·이성권·이종박 이일선·이종배·이종욱 이철규·이헌승·인요한 임이자·임종득·장동혁 정동만·정성국·정연욱 정점식·정희용·조경태 조배숙·조승환·조은희 조정훈·조지연·최보윤 최수진·최은석·최형두 의원(10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및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.

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, 이를 활용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, 발굴 및 제작 등과 관련한 정부의 체계적·선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

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정부가 메타버스·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 등을 키우려는 것임(안 제9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"콘텐츠"를 "콘텐츠(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포함한다)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콘텐츠제작의 활성화) ①	제9조(콘텐츠제작의 활성화) ①
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	
형태의 <u>콘텐츠</u> 가 창작·유통·	콘텐츠(새로운 기술을 활
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	용한 콘텐츠를 포함한다.)
여야 하며, 콘텐츠제작자의 창	
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	
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